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 정원 3명(6급 2명, 운전 9급 1명)의 직급을 상향 조정(5급 2명, 운전 8급 1명)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4. 14. ~ 4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통계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기상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“200”을 “202”로, 행정주사·사회복지주사·통계주사·사서주사·공업주사·농업주사·임업주사·기상주사·보건주사·식품위생주사·환경주사·항공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“147”을 “145”로 하고, 행정서기·사회복지서기·사서서기·공업서기·보건서기·식품위생서기·시설서기·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23 다음에 “운전서기 1”을 신설하며, 운전서기보 “4”를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)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(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

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, 운전서기 1명)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고,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3명(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기상주사 · 보건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환경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2명, 운전서기보 1명)으로 본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의2]

교육부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	· · 200	· · 202	+2
행정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기상주사 · 보건주사 · 식품위생주사 · 환경주사 · 항공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	147	145	-2
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서기 • 사회복지서기 • 사서서기 • 공업서기 • 보 건서기 • 식품위생서기 • 시설서기 • 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	23		
<u>운전서기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운전서기보	<u>4</u>	<u>3</u>	-1
•	•	•	
•	•	•	